



시 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405호 2019. 9. 23.(월)

고 시

○ 목포시 주거환경개선사업(1,2단계) 공사 완료 고시 ----- 2

공 고

○ 목포시 으뜸맛집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7

회람							
----	--	--	--	--	--	--	--

목포시 고시 제2019-175호

목포 주거환경개선사업 공사완료 및 주거환경개선지구 해제 고시

1. 목포시 산정동 1054번지 등 주거환경개선사업 공사가 완료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거환경개선사업 공사완료 및 주거환경개선지구 해제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목포시 도시문화재과/도시계획과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9년 9월 23일

목 포 시 장

1. 공사완료 및 지구해제 내용

연번	정비사업				사 업 시행자 성 명	준공인가 내역				비 고
	종류 및 명칭	시행구역 명칭	위치	면적 (㎡)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천원)	사업기간	
1	주거환경 개선사업	대성 주거환경 개선지구	대성동 202번지 일원	70,219	목포 시장	어린이놀이터뒤편 ~대성주유소	L=115m, B=6m	91,827	'02.07.12~ '04.01.04	준공
						삼일로 ~피난민촌간	L=152m, B=6m	159,965	'03.12.03~ '04.11.26	"
2	주거환경 개선사업	산정1 주거환경 개선지구	산정동 1054번지 일원	52,955	목포 시장	연동석유 ~목포역철도	L=145m, B=6~8m	52,400	'02.04.09~ '03.03.19	준공
						구원뚝 ~산정동1054-29	L=120m, B=8m	92,931	'02.10.02~ '03.12.20	"
3	주거환경 개선사업	죽교 주거환경 개선지구	죽교동 580번지 일원	34,558	-	-	-	-	-	미착수
4	주거환경 개선사업	산정2 주거환경 개선지구	산정동 1044번지 일원	20,553	목포 시장	구)광장마트 앞	L=145m, B=6~8m	52,400	'02.04.09~ '03.03.19	준공
						백년로 ~세일교회간	L=120m, B=8m	92,931	'02.10.02~ '03.12.20	"
5	주거환경 개선사업	산정3 주거환경 개선지구	산정동 1052번지 일원	7,579	-	-	-	-	-	미착수

연번	정비사업				사 업 시행자 성 명	준공인가 내역				비 고
	종류 및 명칭	시행구역 명칭	위치	면적 (㎡)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천원)	사업기간	
6	주거환경 개선사업	대성양동 주거환경 개선지구	양동 61번지 일원	98,106	목포 시장	구)옛공장 ~유달파크	L=143m, B=6m	300,847	'02.04.29~ '03.03.11	준공
						대성초교후문 ~호남죽교	L=184m, B=6~8m	182,135	'02.12.14~ '03.12.30	"
						대성초등학교 후문	L=248m, B=10m	104,832	'04.12.09~ '06.12.30	"
						대성농협 ~유달파크	L=354m, B=8m	540,773	'04.06.24~ '05.06.17	"
						양동우체국 ~대성초등학교	L=103m, B=6m	77,359	'04.03.11~ '05.11.10	"
						양동장로교회 옆	L=94m, B=6m	118,763	'05.12.01~ '06.11.30	"
						양동51 ~양동우체국간	L=106m, B=6m	76,304	'05.11.18~ '06.11.17	"
7	주거환경 개선사업	죽교2 주거환경 개선지구	죽교동 573번지 일원	36,462	목포 시장	삼일로~죽교천간	L=100m, B=6m	81,250	'01.12.24~ '03.05.03	준공
8	주거환경 개선사업	죽교3 주거환경 개선지구	죽교동 42번지 일원	65,195	목포 시장	은성탕 일원	L=112m, B=6m	66,564	'02.04.17~ '03.04.16	준공
						죽교시장 ~죽교동75-12	L=171m, B=6m	149,706	'02.12.16~ '04.03.05	"
						국민주택 ~스카이빌라	L=160m, B=6m	244,207	'04.07.15~ '05.10.21	"
						죽교동 농협 뒤	L=105m, B=6m	109,841	'04.05.19~ '05.06.23	"
						죽교동16-6 ~북향로간	L=109m, B=6m	71,343	'04.11.18~ '05.11.10	"
9	주거환경 개선사업	죽교4 주거환경 개선지구	죽교동 363번지 일원	47,549	목포 시장	관광지 진입도로	L=228m, B=6m	725,537	'03.12.08~ '05.02.04	준공
						주차장 조성	A=9,800㎡	2,402,112	'04.04.26~ '06.10.25	"
10	주거환경 개선사업	이로2 주거환경 개선지구	용해동 374번지 일원	17,498	-	-	-	-	-	미착수
11	주거환경 개선사업	산정4 주거환경 개선지구	산정동 154번지 일원	39,389	목포 시장	산정동110-1 ~카톨릭병원	L=90m, B=6m	52,019	'02.11.26~ '03.12.15	준공
						월정초상화 ~산정동51-6	L=86m, B=6m	52,451	'02.12.04~ '03.12.17	"
						원예공판장 ~9호광장	L=230m, B=10m	744,481	'04.06.24~ '05.12.05	"
						서남방송 건너편	L=90m, B=8m	105,569	'04.07.30~ '05.02.21	"
						삼일로 ~연산배수지	L=103m, B=6m	204,136	'04.12.03~ '06.12.30	"
						진주교회 주변	L=175m, B=8m	99,912	'04.11.18~ '05.10.18	"
						원호주택 주변	L=89m, B=6m	107,839	'04.06.19~ '04.12.27	"
						산정교회 건너편	L=342m, B=6m	490,528	'05.05.24~ '06.05.23	"

연번	정비사업				사 업 시행자 성 명	준공인가 내역				비 고
	종류 및 명칭	시행구역 명칭	위치	면적 (㎡)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천원)	사업기간	
12	주거환경 개선사업	산정5 주거환경 개선지구	산정동 13번지 일원	51,680	목포 시장	산정동143-21 ~철도부지	L=143m, B=6m	92,075	'02.10.02~ '04.01.03	준공
						산정동23-62 ~23-147번지	L=120m, B=6~8m	275,520	'04.05.11~ '04.12.24	"
						산정초교 옆	L=136m, B=6m	273,327	'04.12.17~ '06.12.26	"
						유달중학교 옆	L=160m, B=8m	272,347	'04.10.07~ '06.01.30	"
13	주거환경 개선사업	만호 주거환경 개선지구	만호동 1번지 일원	23,862	-	-	-	-	-	미착수
14	주거환경 개선사업	서산 주거환경 개선지구	서산동 4번지 일원	82,621	목포 시장	구)서산동사무소 ~유달초교	L=220m, B=6~8m	579,703	'03.12.03~ '05.01.27	준공
						유달초교 담장 옆	L=386m, B=6m	1,000,534	'05.05.24~ '06.05.23	"
15	주거환경 개선사업	이로1 주거환경 개선지구	용해동 518번지 일원	27,323	목포 시장	관해마을 ~보훈청간	L=192m, B=6~8m	136,913	'03.12.23~ '05.04.08	준공
16	주거환경 개선사업	유달 주거환경 개선지구	온금동 1번지 일원	8,071	목포 시장	구)제일여고입구 ~학암사	L=159m, B=4~5m	73,495	'04.11.17~ '05.06.07	준공
17	주거환경 개선사업	온금 주거환경 개선지구	온금동 9번지 일원	45,805	-	-	-	-	-	서산·온금 재촉지구
18	주거환경 개선사업	용해 주거환경 개선지구	용해동 산45-13번 지 일원	4,537	목포 시장	청해사 앞	L=130m, B=6m	87,676	'02.10.02~ '04.02.03	준공
19	주거환경 개선사업	대성2 주거환경 개선지구	대성동 22번지 일원	79,586	목포 시장	대성노인정~구한 진탕간	L=160m, B=6m	211,410	'02.11.25~ '03.11.24	준공
						목포교회 앞	L=113m, B=12m	94,672	'04.30.10~ '05.01.04	"
						진주교회~연산배 수지간	L=330m, B=6~8m	568,311	'04.06.24~ '05.09.17	"
20	주거환경 개선사업	죽교5 주거환경 개선지구	죽교동 289번지 일원	148,006.7	목포 시장	구)죽교3동사무소 ~유달산일주도로	L=337m, B=6m	234,271	'02.04.16~ '03.04.15	준공
						성실교회 일원	L=98m, B=6m	92,829	'02.11.28~ '04.03.26	"
						북교동성당 ~죽교동277-10	L=136m, B=6m	100,710	'04.03.18~ '06.03.24	"
						북교동 성결교회 뒤	L=125m, b=6m	117,807	'04.07.14~ '05.12.27	"
						구)벽산컴퓨터 학원 옆	L=90m, B=6m	98,014	'05.12.02~ '06.05.03	"
21	주거환경 개선사업	죽동 주거환경 개선지구	죽동 140번지 일원	27,192	목포 시장	초원맨션 옆	L=119m, B=6m	79,480	'02.07.20~ '04.04.02	준공
22	주거환경 개선사업	동명 주거환경 개선지구	동명동 1번지 일원	19,030	-	-	-	-	-	미착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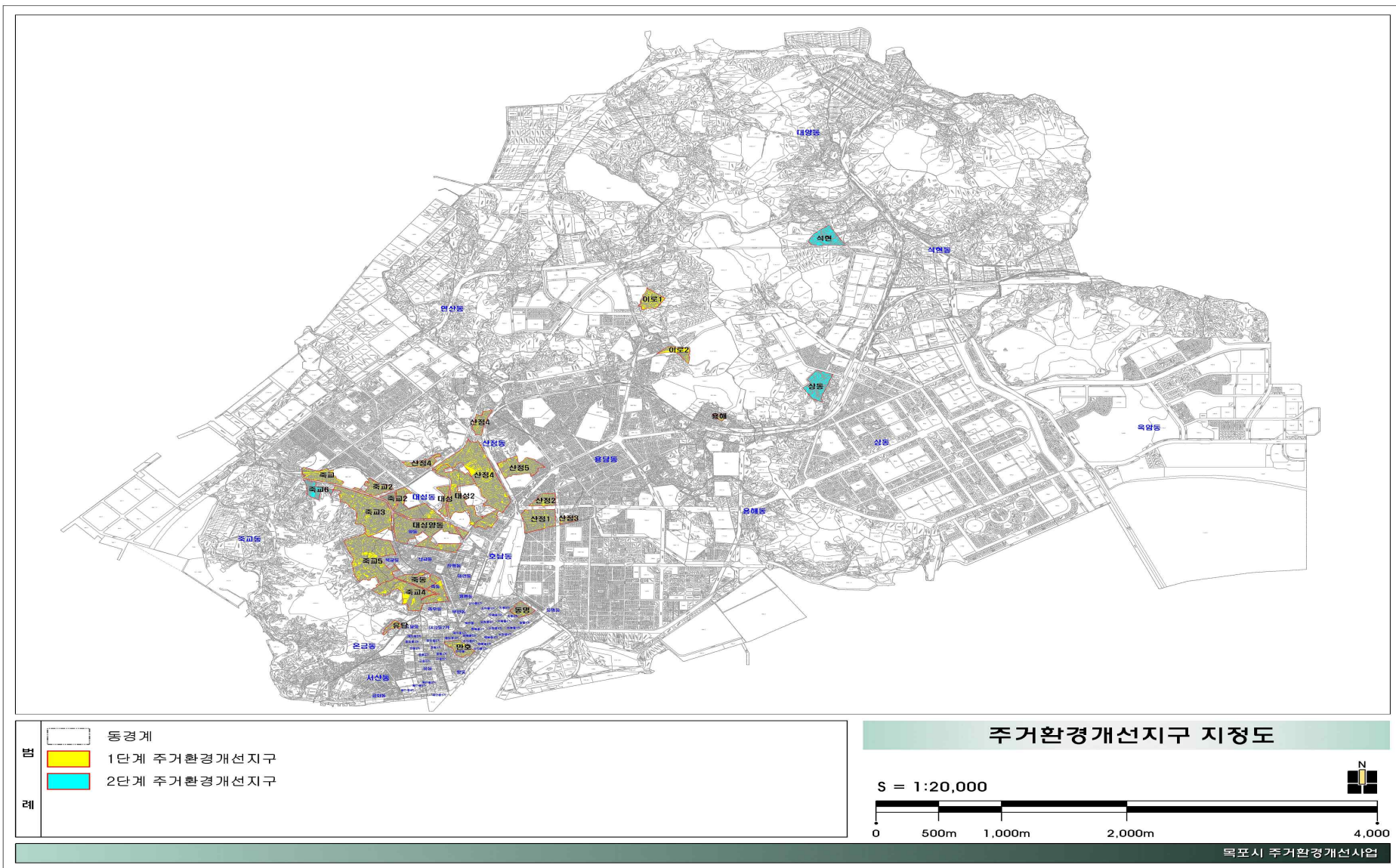
연번	정비사업				사 업 시행자 성 명	준공인가 내역				비 고
	종류 및 명칭	시행구역 명칭	위치	면적 (㎡)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천원)	사업기간	
23	주거환경 개선사업	상동 주거환경 개선지구	상동 163번지 일원	43,942	목포 시장	중화마을 3길 도로개설	L=87m, B=8m	3,544,000	'10.3.09~ '11.8.09	준공
						중화마을 2길 도로개설	L=207m, B=8m			"
						공원 조성	A=848㎡			"
						주차장 조성(2개소)	A=1,596㎡			"
24	주거환경 개선사업	죽교6 주거환경 개선지구	죽교동 581번지 일원	20,300	목포 시장	돌골마을2길 도로개설	L=330m, B=8m	3,900,000	'10.4.08~ '11.11.30	준공
						죽선로 도로개설	L=113m, B=6m			"
						공원 조성	A=777㎡			"
						주차장 조성	A=656㎡			"
25	주거환경 개선사업	석현 주거환경 개선지구	석현동 845번지 일원	38,000	목포 시장	도룡마을 1길 도로개설	L=249m, B=8m	3,300,000	'10.4.08~ '13.1.10	준공
						예향어린이집 도로개설	L=295m, B=8m			"
						분향교회 앞길 도로개설	L=134m, B=8m			"
						주차장 조성	A=1,129㎡			"

2.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해제 구역도 : 붙임

3. 기타 문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도시문화재과(☎061-270-34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2 :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 현황도



목포시 공고 제2019-1302호

입 법 예 고

『목포시 으뜸맛집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23일

목 포 시 장

1. 제정이유

- 목포시 으뜸맛집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관리 조례를 제정, 우리시를 대표할 수 있는 맛집 지정과 육성을 통해 관광 상품화하여 목포 시민의 소득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함

2.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 으뜸맛집 발굴·지정·관리 등(안 제3조, 제4조, 제6조 ~ 제10조)
- 으뜸맛집 지원(안 제5조)
- 으뜸맛집선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안 제11조 ~ 제16조)
- 으뜸맛집 발굴·육성 위원회 수당(안 제17조)
- 으뜸맛집 시행규칙 (안 제18조)

3. 제정조례안 : 별첨

4. 관계법령 : 해당없음

5. 예산수반사항 : 없음

6.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개선사항 없음

7. 규제심사(심의)대상 여부 검토 : 해당없음

8. 입법예고 : 2019. 9. 23. ~ 10. 14. (21일)

9. 사전협의(승인)사항 : 해당없음

10. 의견제출

○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목포시장(관광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시 기재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서 제출처 : 목포시청 관광과

- 주 소 : 목포시 양을로 203, 목포시청 관광과
- 전화번호 : 061-270-8635
- 팩 스 : 061-270-8569

11.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http://www.mokpo.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목포시청 관광과(☎ 061-270-8635 FAX 270-85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시 조례 제 호

목포시 으뜸맛집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에 소재하는 일반음식점에서 조리·판매하는 음식의 맛 등이 우수하여 목포시를 대표할 수 있는 업소에 대해 으뜸맛집 지정 및 관리 기준 등을 정하여 새로운 음식의 발굴·육성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차별화된 경쟁력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반음식점”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에 따른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써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말한다.
2. “일품맛집” (이하 “맛집”이라 한다)이란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일반음식점에서 조리·판매하는 음식의 맛, 서비스, 향토성, 위생, 분위기, 영업철학 등이 우수한 업소에 대하여 이 조례에 따라 선정한 업소를 말한다.
3. “영업자”란 「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자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영업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제3조(육성계획 수립)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음식점의 질 높고 경쟁력 있는 맛집을 육성하기 위하여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맛집의 육성에 관한 방향
2. 음식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맛집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3. 음식문화 개선 및 서비스 수준 향상에 관한 사항
4. 맛집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음식관광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맛집의 지정 등) ① 시장은 시에 소재한 일반음식점 중 맛, 서비스, 향토성, 위생, 분위기, 영업철학 등이 우수한 업소를 맛집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맛집의 지정기준 및 지정신청·지정심사 등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맛집에 대한 지원) 시장은 맛집의 육성 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맛집 지정패 교부·부착
2. 지도 발간·배부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
3. 맛의 개발 및 서비스·위생 교육 등 역량강화 지원
4. 위생용품 및 시설·환경개선을 위한 보조금 지원
5. 식품진흥기금의 시설개선자금 융자 추천
6. 그 밖에 맛집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6조(사후관리 및 지정취소 등) ① 시장은 지정된 맛집의 질적 수준 유지와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으뜸맛집선정위원회등으로 하여금 제4조에서 정한 맛집 지정기준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맛집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식품위생법」 등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2. 제6조 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지정기준에 미달된 경우
3. 신청 당시의 주메뉴가 변경되었을 경우
4.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의 시정 또는 시설개수명령을 받았을 경우
5. 영업장이 다른 지역으로 변경한 경우와 폐업을 한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자격상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경우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맛집 지정패 회수
2. 그 밖에 맛집 지정에 따른 지원 중지

제7조(지위승계) 선정된 맛집의 대표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관계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제4조에 정한 맛집 지정기준을 조사하게 하여 기준에 적합 시 그 맛집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8조(포상) 시장은 맛집 육성 시책에 공로가 큰 단체 또는 개인에게 「목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명칭 등 사용의 금지) 맛집으로 지정받지 아니한 자는 시의 맛집으로 지정된 업소임을 알리는 표시 및 이와 동일하거나 구분이 어려운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지도감독) 시장은 맛집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받거나 소속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선정위원회) 맛집의 발굴·육성·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목포 으뜸맛집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를 둔다.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한다.

1. 맛집의 발굴·육성 시책에 관한 사항
2. 맛집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
3. 맛집의 관광 상품화 및 상표 사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맛집과 관련된 주요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어느 한 쪽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관계 공무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식품·외식·관광 관련 학계 및 전문가
3. 요리 전문가, 맛칼럼니스트 등 맛과 관련하여 전문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언론인 및 시민단체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발하며,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4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 중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위원회의 운영)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퇴를 원할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3. 아무런 연락 없이 2회 이상 회의에 불참하는 등 그 직무를 소홀히 한 경우
4. 품위 손상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17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목포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지정된 으뜸맛집은 이 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목포시 으뜸맛집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항목별 내용	찬성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		